

身体犯用
被害者の手引

피해를 당하신 분께



경시청

머릿말

이 소책자는 피해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에게

-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해 심신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 수사와 재판은 어떤 수속으로 진행되는가
- 수사시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 피해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정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마음의 문제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피해자 자신과 가족만이 대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실 때 이 소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지원제도와 상담 창구 등을 참고하고 이용하심으로써 염려와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도 상호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안심하시고 상담하십시오.

법률 용어와 조금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만,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상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はじめに

この小冊子は、被害にあわれた方やそのご家族に

- 被害にあったことで、心身にどのような反応が起きて、どう対応したらよいか
- 捜査や裁判は、どのような手続で進んでいくのか
- 捜査上、被害者やご家族にどのようなお願いをするのか
- 被害者やご家族が利用できる支援制度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か

などについてお知らせし、情報不足から生じる様々な不安を少しでも解消できればと考えて作成したものです。

「被害にあったことが本当であるのか信じられない。」、「どうしたらよいか分からない。」などの心の問題もあるでしょう。時には、経済的な問題が起こることもあるでしょう。

しかし、こうした問題に被害者自身やご家族だけで立ち向かわ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折りにふれ、この小冊子に掲載されている各種支援制度や相談窓口などをご覧いただき、利用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各種手続がスムーズに進み、悩みや問題解決の一助になればと願っております。

また、関係機関においても、相互に連携を図り、問題解決に取り組んでいきますので、どうぞ安心してご相談ください。

法律用語とは若干異なる記載もありますが、趣旨をご理解の上、ご活用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もう一度 あなたの笑顔を見たいから
～相談してみませんか～**



목 차

1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해 심신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2	일반적인 일본의 형사 수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5
	○수사 활동 단계	
	○기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	
	○재판 단계	
	○일본의 형사 수속의 진행 절차	
	○소년 사건의 수속	
3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수사의 협조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15
	○사정 청취	
	○피해를 당하신 아이들의 보호자·관계자분들께	
	○증거품 제출과 증거자료 채취	
	○현장 검증(실황 확인)의 입회	
	○고소	
	○법원 출두(재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4	경시청에는 경찰에서의 수사 경과 등을 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23
	○피해자 연락제도	
5	형사 재판에 참가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25
	○피해자 참가제도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	
	○손해배상명령 제도	
6	사건이나 재판, 범인의 상황 등을 아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7
	○피해자 등 통지제도	
	○피해자 등 상담실, 범죄피해자 지원실	
7	소년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29
8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는 심정 등 청취·전달제도가 있습니다.	31
9	도쿄보호관찰소에는 심정 등 청취·전달제도 등이 있습니다.	33
10	경시청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35
	(의료비 등 공비 지급)	
11	범죄피해 급부제도가 있습니다.	37
12	도쿄도에는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39
	○위로 지원금 지급	
	○이전비 지원	
	○무료 법률 상담	
	○피해자참가제도에서의 변호사 비용 지원	
13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습니다.	43
14	세법상의 경감조치가 있습니다.	45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	
	○소득 공제	
	○납세 완화 조치	
15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7
16	도영주택 입주시에 우대추첨제도가 있습니다.	49
	○범죄피해자세대	
	○ODV피해자세대	
17	폭력단 등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1
18	피해자 여러분의 다양한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53
19	도쿄도외국인상담실	55

目次

1 被害にあったことで、心身に様々な反応が起こることがあります。.....	2
2 一般的な日本の刑事手続は、次のように進みます。.....	6
○捜査活動の段階	
○起訴・不起訴の処分を決める段階	
○裁判の段階	
○日本の刑事手続の流れ	
○少年事件の手続	
3 被害者やご家族には、捜査へのご協力を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	16
○事情聴取	
○被害にあわれたお子さまの保護者・関係者の方へ	
○証拠品の提出と証拠資料の採取	
○現場検証（実況見分）への立会い	
○告訴	
○裁判所への出頭（裁判で利用できる制度）	
4 警視庁には、警察での捜査の経過等をお知らせする制度があります。.....	24
○被害者連絡制度	
5 刑事裁判に参加する制度などがあります。.....	26
○被害者参加制度	
○被害者国選弁護制度	
○損害賠償命令制度	
6 事件や裁判、犯人の状況を知る等の制度があります。.....	28
○被害者等通知制度	
○被害者等相談室、犯罪被害者支援室	
7 少年による事件の被害者等には、次のような制度があります。.....	30
8 刑務所や少年院などには、心情等の聴取・伝達制度があります。.....	32
9 東京保護観察所には、心情等聴取・伝達制度などがあります。.....	34
10 警視庁には、被害者等に対する経済的支援の制度があります。.....	36
(医療費等公費支出)	
11 犯罪被害給付制度があります。.....	38
12 東京都には、被害者等のための支援制度があります。.....	40
○見舞金の支給	
○転居費用の助成	
○無料法律相談	
○被害者参加制度における弁護士費用の助成	
13 民事上の損害賠償請求制度があります。.....	44
14 税法上の軽減措置があります。.....	46
○申告納付期限の延長	
○所得控除	
○納税緩和措置	
15 社会保険制度が適用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48
16 都営住宅の入居における優遇抽せん制度があります。.....	50
○犯罪被害者世帯	
○DV被害者世帯	
17 暴力団などに関するあらゆる相談ができます。.....	52
18 被害者の様々なサポートをする支援機関があります。.....	54
19 東京都外国人相談.....	56

1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해 심신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 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까운 분들이 피해에 휘말리면, 현저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증상이나 특이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며 필요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족분에게 자주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안 좋은 증상 및 특이한 반응

- 잠을 자지 못하게 되거나 자주 깨거나 또는 악몽을 꾸는 기회가 늘어난다.
- 식사량이 크게 줄거나 늘어나거나 한다
- 감정이 솟지 않거나 감정의 제어가 어려워진다
- 피해와 관련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 큰 불안감이나 공포감에 시달린다
- 집중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 작은 소리에 놀라거나 반응한다
- 의욕이 생기기 어렵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다
- 자책감에 시달린다
- 피해를 입은 일이 남의 일이나 꿈 속에서 일어난 일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1 被害にあったことで、心身に様々な反応が起こることがあります。

事件・事故の被害者になったり、身近な方が被害に巻き込まれたりすると、著しいストレスから心身の不調や特異な反応が出現することがあります。個人差がありますが「誰にでも起こりう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ください。

周囲の方々は、急かすことなく、温かい目で見守る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支援の手を差し伸べてください。

被害者・ご家族に出現しやすい心身の不調や特異な反応

- 眠れなくなったり、途中で目が覚めやすくなったり、悪夢が増えたりする
- 食事量が大幅に減ったり増えたりする
- 感情が湧かなかったり、感情の制御が難しくなったりする
- 被害と関連することが頭から離れなかつたり、記憶がよみがえったりする
- 大きな不安や恐怖感に襲われる
- 集中力が続かなくなってしまう
- 小さな物音に驚いたり、反応したりする
- やる気が生じにくい、何も手に付かない
- 楽しみや喜びを感じにくくなってしまう
- 人を信じ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
- 自責の念にかられることがある
- 被害を他人事のように思ったり、夢の中の出来事のように思ったりする



피해자 ·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말

-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조차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이나 피해자지원도민센터(P53참조), 도쿄도외국인상담(P55참조) 등 지원 단체에 상담하시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피해를 연상시키는 일을 피하고 싶다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피해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양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원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요한 문제를 서둘러 결정한 것이 후회된다
피해 영향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이혼, 큰 계약 등을 서둘러서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 가족분들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당하기 전의 생활 리듬으로 조정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물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모니터링하거나 가까운 분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천천히 피해 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도록 시도해 보십시오.
-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안 좋은 증상이나 특이한 반응에서 회복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몸과 마음의 안 좋은 증상이나 특이한 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被害者・ご家族からお聞きする声

○何に困っているのかさえ分からない

事件・事故の当事者になると、何に困っているのかさえ分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信頼できる周囲の人や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P54参照）、東京都外国人相談（P56参照）などの支援団体に相談したり、力を借り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被害を連想させることを避けたい

捜査機関との関わりを避けたくなり、着信に応答したくなくなるようなことさえあるかもしれません。そのようなときには、遠慮せずに担当捜査員に気持ちを打ち明け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重大な決断を焦ったことを後悔する

被害の影響などのため、普段よりも判断能力が低下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転職、離婚、大きな契約などを急いでしまい、後悔することがあります。状況次第では、重大な決断は急がないことをお勧めします。

被害者・ご家族に知ってほしいこと

○被害前の生活リズムを心掛けてください

無理は禁物ですが、自分の気持ちを冷静にモニタリングしたり、身近な人との関係を今まで以上に大切にしたりしながら、徐々に被害前の生活リズムを取り戻すような工夫をしてみてください。

○必要に応じて医療機関や専門家を頼ってください

心身の不調や特異な反応からの回復のペースは人それぞれですが、生活に大きな影響が出てしまっていたり、心身の不調や特異な反応が長く続いたりするならば、ためらわずに医療機関や専門家を頼ってみてください。

2 일반적인 일본의 형사 수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범죄 발생 후부터 형을 집행할 때까지의 절차를 **형사 수속**이라고 하며 이것은 크게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9페이지의"일본의 형사 수속의 진행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수사 활동 단계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이 범인이라고 지목한 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경찰은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해서 48시간 이내에 서류나 증거품과 함께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관에게 **송치** (※1) 합니다.

이를 넘겨 받은 검찰관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류의 청구** (※2) 를 하며, 판사가 그 청구를 인정하면, 피의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장 20일간 구류 상태에 있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수사를 계속합니다.

※1 **송치**란 경찰이 서류와 증거품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이전하는 수속을 말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에는 그 신병을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수속을 해야 합니다.

※2 **구류**란 체포한 피의자(피고인)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 그 신병을 계속해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 一般的な日本の刑事手続は、次のように進みます。

犯罪の発生から刑の執行までの流れを**刑事手続**といい、これは、大きく、**捜査・起訴・裁判**の3つの段階に分かれます。
(10ページの「刑事手続の流れ」をご覧ください。)

捜査活動の段階

犯人を発見し、証拠を収集することなどによって、事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捜査**といいます。

警察が犯人であると認める者を**被疑者**といい、警察は、必要な場合には被疑者を逮捕して、48時間以内に書類や証拠品とともに身柄を検察官に**送致**(※1)します。

これを受けた検察官が、その後も継続して被疑者の身柄を拘束して捜査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た場合には、24時間以内に裁判官に対して**勾留の請求**(※2)を行い、裁判官がその請求を認めると、被疑者は、特別な場合を除いて、最長で20日間勾留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

被疑者が勾留されている間にも、警察や検察は様々な捜査を行います。

- ※1 **送致**とは、警察が書類や証拠品とともに事件を検察官に送り届ける手続のことをいいます。被疑者を逮捕したときは、その身柄を拘束したときから48時間以内にこうした手続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2 **勾留**とは、逮捕した被疑者(被告人)が逃亡したり証拠を隠すおそれなどがある場合に、その身柄を続けて拘束することをいいます。

기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

검찰관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와 증거품, 그리고 검찰관 스스로 피의자와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등을 검토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부칠 것인지 여부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재판에 부치는 처분을 **기소**

○재판에 부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라고 합니다.

기소 처분에는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열 것을 청구하는 **공판청구**,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청구** 이들 2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됐을 경우 고소인·피해자 등은 검찰심사회에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피의자의 공판이 청구되고 법정이 열리는 날이 정해진 후,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소된 단계에서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찰관과 피고인이 판결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상급 법원(고등법원 등)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길 원하는 분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검찰청,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 또는 피해자 연락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상이 일반적인 형사 수속의 개요입니다만, 범인이 소년(20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심판수속으로 진행되는 등 앞서 언급한 수속과는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소년 사건의 수속"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 | | | |
|-------------------------------------|---|---------------|
| ■도쿄고등법원 | } | ☎03-3581-5411 |
| ■도쿄지방법원 | | |
| ■도쿄지방검찰청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 | ☎03-3592-7611 |
| ■도쿄지방검찰청 다치카와 지부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 | ☎042-548-5766 |
| ■사건을 다룬 경찰서 | | |

起訴・不起訴の処分を決める段階

検察官は、警察から送られた書類や証拠品と検察官自らが被疑者や関係者を取り調べた結果等を検討し、被疑者を裁判にかけるか否かの処分を決定しますが、

○裁判にかける処分を**起訴**

○裁判にかけない処分を**不起訴**

といたします。

起訴処分には、公開の法廷で裁判を開くことを請求する**公判請求**、書面審理だけの裁判を請求する**略式命令請求**の2種類があります。

また、不起訴処分となった場合、告訴人・被害者等は、検察審査会に、その処分の当否について審査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

裁判の段階

被疑者が公判請求され、法廷が開かれる日が決められた後、裁判所において審理が行われ、判決が下されます。

起訴された段階で、被疑者は、**被告人**と呼び変えられます。

検察官や被告人が判決の結果に不服がある場合には、さらに、上級の裁判所(高等裁判所等)に訴えることができます。

裁判を傍聴したい方は、事件を担当する裁判所、検察庁、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又は被害者連絡員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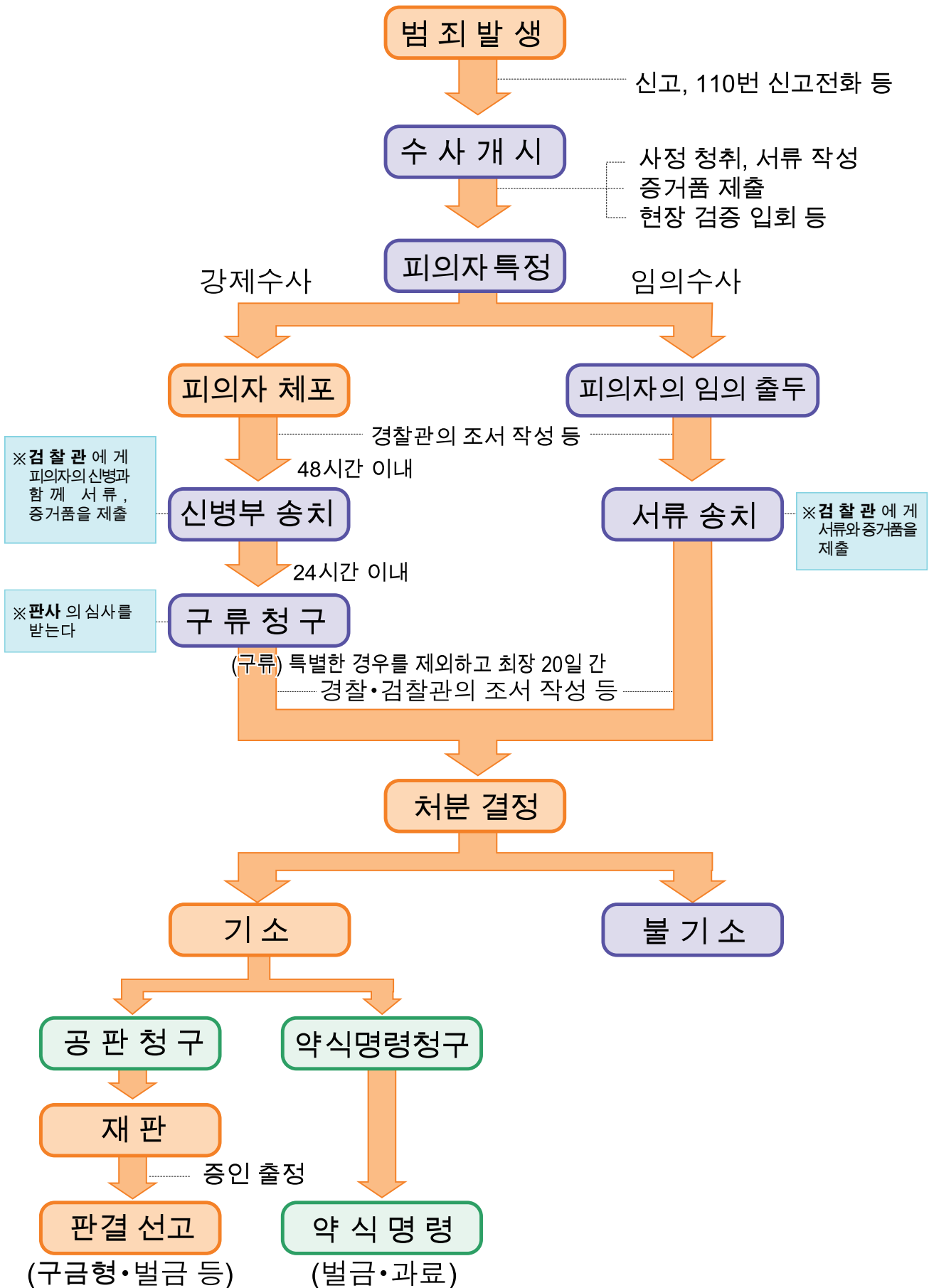
以上が一般的な刑事手続の概要ですが、犯人が少年(20歳未満)の場合には、少年審判手続による場合など、上記の手続とは違う場合があります。

(12ページの「少年事件の手続」をご覧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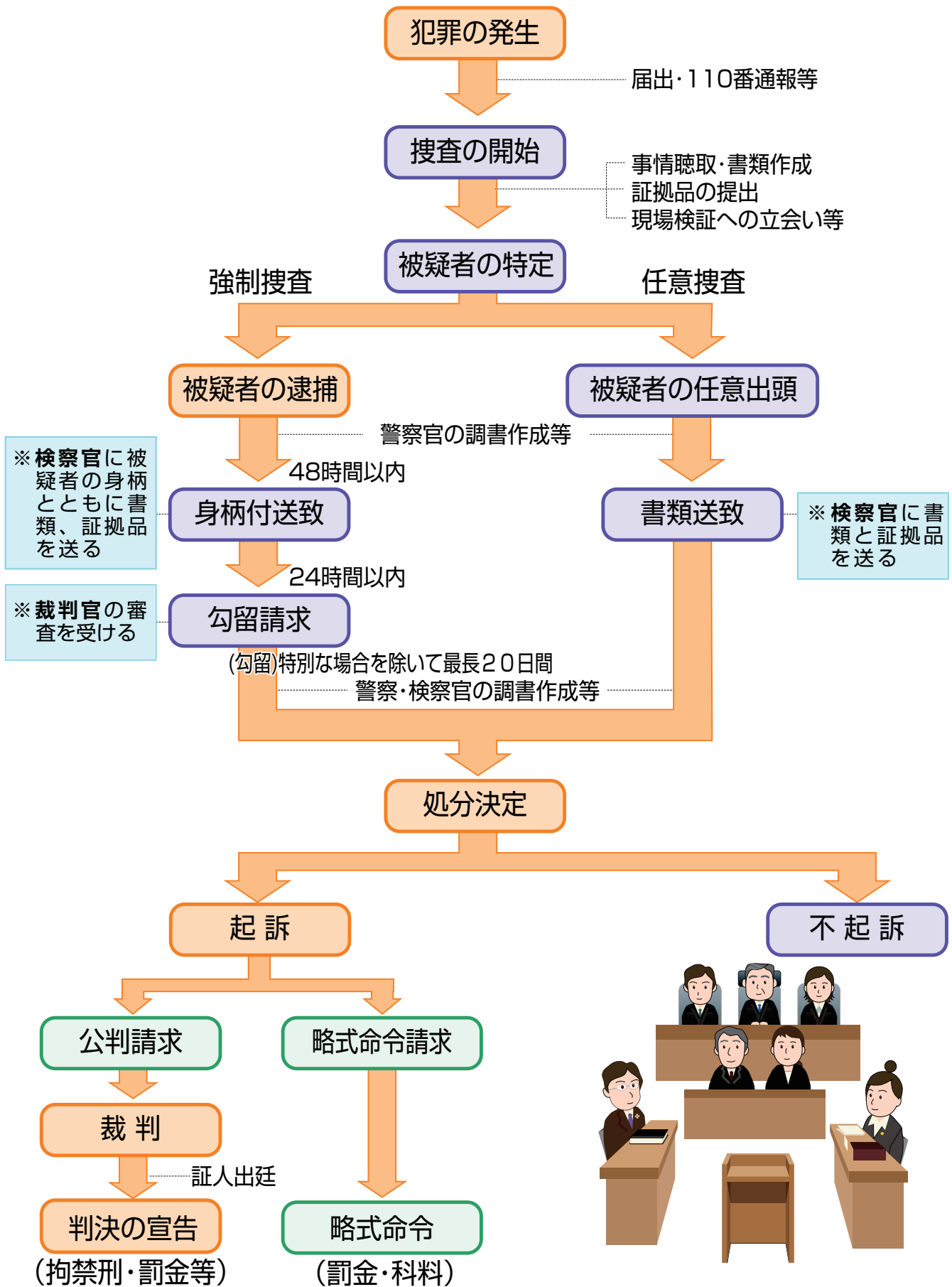
◎問合せ先

- | | | |
|-----------------------------|---|---------------|
| ■東京高等裁判所 | } | ☎03-3581-5411 |
| ■東京地方裁判所 | | |
| ■東京地方検察庁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 | ☎03-3592-7611 |
| ■東京地方検察庁立川支部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 | ☎042-548-5766 |
| ■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 | | |

일본의 형사 수속의 진행 절차



日本の刑事手続の流れ



소년 사건의 수속

범인이 소년(20세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년심판 수속**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수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범인이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일 경우

○수사 등

-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결과
→구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에는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관은 소년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의견을 달아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심판

가정법원은 송치되어 온 사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해서 **심판 개시, 심판 불개시, 검찰관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소년심판수속은 비행소년의 교육적인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행해지는 비공개 수속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수속과는 다릅니다.

검찰관 송치(이른바 역송)는 소년이 흉악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등 형사 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행해지며, 검찰관 송치가 된 소년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인 사람과 동일한 수속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인이 14세 미만인 소년일 경우

○조사 등

경찰에서는 **14세에 달하지 않고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하며, 소년에 대해 체포 등의 신병 구속은 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수 있는 것 외에 소년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될 때에는 **아동상담소에 송치**합니다.

○아동상담소의 조치

송치 또는 통고를 받은 아동상담소는 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조치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나 수양부모에게 위탁 등**)를 취해 사안을 종료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보내진 소년은 14세 이상의 소년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개시할 것인지 결정을 받습니다.

◎문의처

- 도쿄가정법원 (일본어로 대응) ☎03-3502-8311
- 도쿄지방검찰청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3-3592-7611
- 도쿄지방검찰청 다치카와 지부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42-548-5766
- 가까운 아동상담소
- 사건을 다룬 경찰서

少年事件の手續

犯人が少年（20歳未満）の場合は、原則として少年審判手續によって処理されるため、一般的な刑事手續とは異なります。

犯人が14歳以上20歳未満の少年である場合

○捜査等

14歳以上18歳未満の少年によって起こ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捜査を遂げた結果、

→ 拘禁刑以上の刑に当たる罪の場合は、検察官に送致します。送致を受けた検察官は、少年をどのような処分にするのが良いか意見を付け、家庭裁判所に送ります。

→ 罰金以下の刑に当たる罪の場合は、警察が直接、家庭裁判所に送致します。

18歳以上20歳未満の少年によって起こ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全て検察官に送致します。

○審判

家庭裁判所では、送致されてきた事件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行い、**審判開始、審判不開始、検察官送致**などの決定をします。少年審判手續は非行少年の教育的な保護のために、家庭裁判所で行われる非公開の手續で、処罰を目的とする刑事手續とは異なります。

検察官送致（いわゆる逆送）は、少年が凶悪重大な犯罪を犯した場合など刑事処分が相当と認められる場合に行われ、検察官送致となった少年は原則として、20歳以上の者と同様の手續によって裁判を受けることとなります。

犯人が14歳未満の少年である場合

○調査等

警察では、14歳に満たないで刑罰法規に触れる行為をした少年（触法少年）については必要な調査を行い、少年に対し逮捕等の身柄拘束はできませんが、押収・搜索等の強制処分ができます。調査の結果、**児童相談所に通告**することができるほか、少年について家庭裁判所の審判に付すべきと思料するときは、**児童相談所に送致**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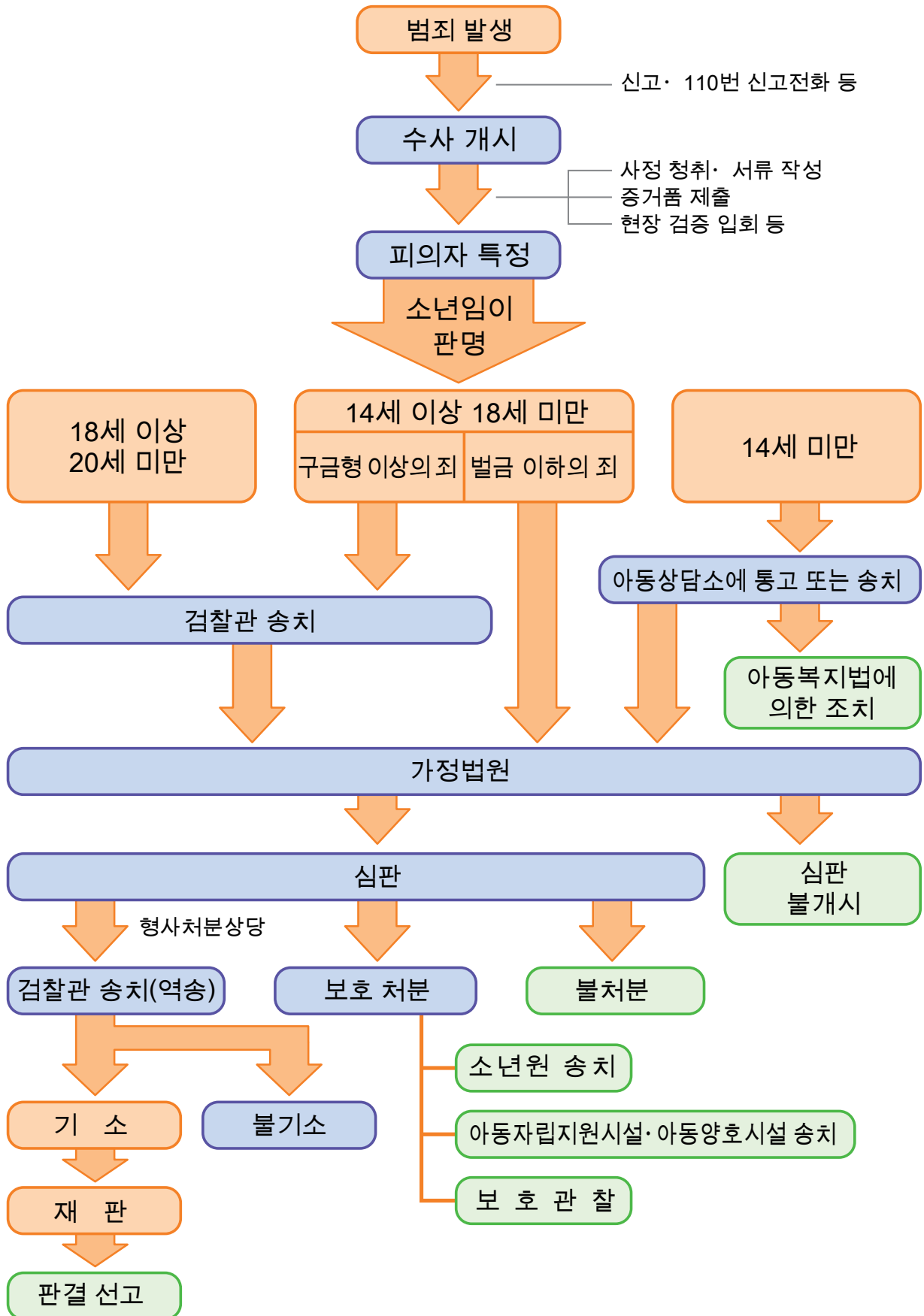
○児童相談所における措置

送致又は通告を受けた児童相談所では、少年に対し児童福祉法上の措置（**児童自立支援施設への入所や里親への委託等**）をとり、事案を終了させるほか、家庭裁判所での審判が必要と判断した場合は**家庭裁判所に送り**、送られた少年は14歳以上の少年と同様に審判を開始するかどうかの決定を受け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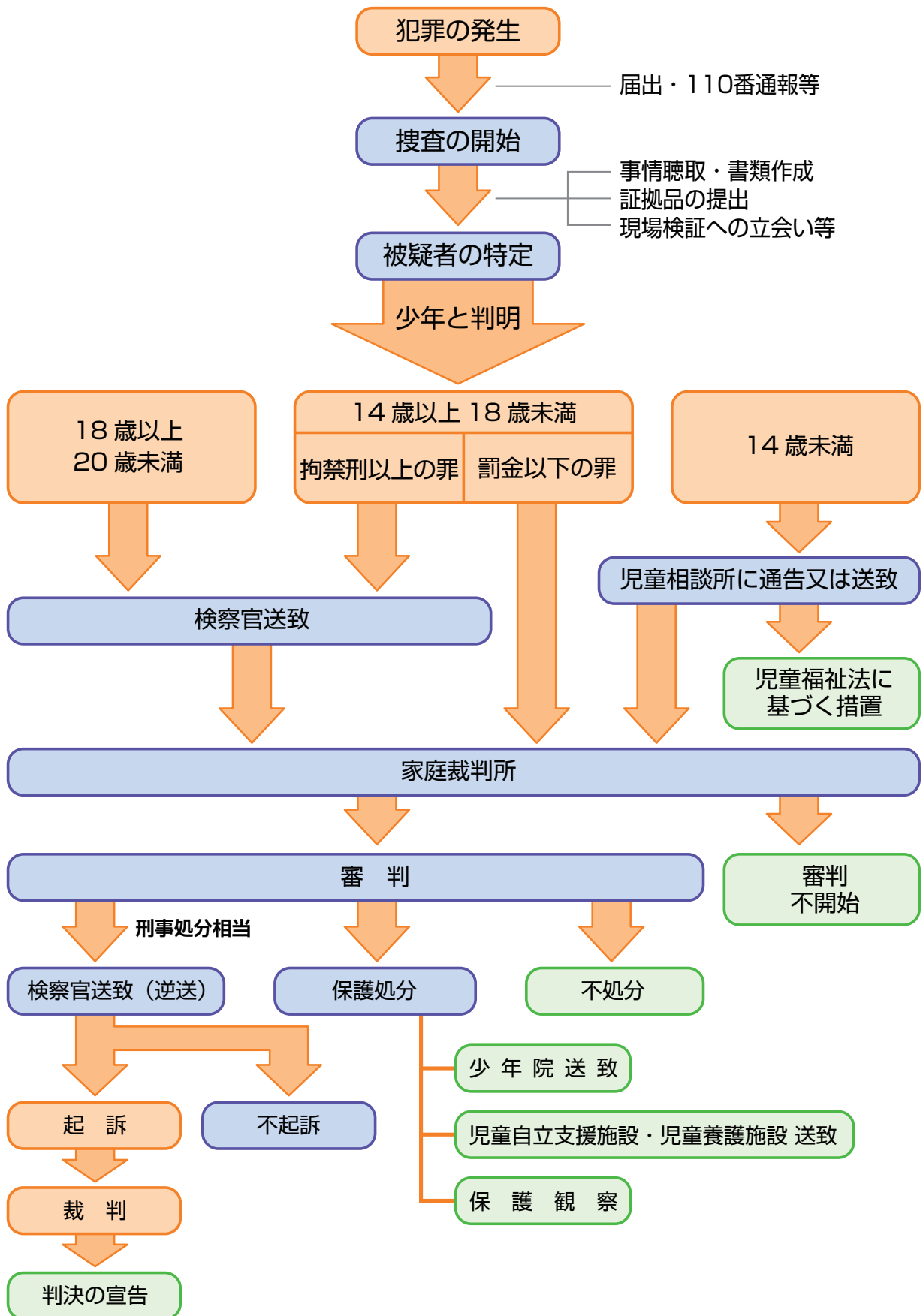
◎問合せ先

- 東京家庭裁判所（日本語で対応） ☎03-3502-8311
- 東京地方検察庁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3-3592-7611
- 東京地方検察庁立川支部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42-548-5766
- 最寄りの児童相談所
- 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

소년 사건 수속의 진행 절차



少年事件手続の流れ



3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수사의 협조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수사의 협조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자를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정 청취

피해자와 가족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면 담당 수사원이 피해의 상황이나 범인의 모습 등에 대해 상세한 사정을 청취합니다. 기억 나기 싫고 말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범죄의 입증과 피의자의 특징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수사상 필요하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정 청취 담당 수사원은 피해자 분이 원하시는 성별의 수사원이 배당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가족 분은 경찰관에 의한 사정 청취 외에도 검찰관에게도 사정을 말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묻는 것이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검찰관이 피의자를 기소(불기소) 할지, 법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벌을 구형할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해 발생 직후 수사에 협조를 해 주시고 귀가하실 때까지 초기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관(초기지원요원)이 피해자와 함께 하며 피해상황을 청취하거나 고민거리 상담을 받습니다.

3 被害者やご家族には、捜査へのご協力を 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

被害者やご家族には、捜査へのご協力を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また、そのことで負担をおかけすることがあります。

事件を蒸し返されるようでつら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被疑者を逮捕し、処罰するために必要なことです。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具体的には、次の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

事情聴取

被害者やご家族が警察に被害を届け出ると、担当の捜査員が、被害の状況や犯人の様子などについて詳しく事情をお聞きします。思い出したくないこと、話したくない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が、犯罪の立証や被疑者の特定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重要なことを捜査上の必要があってお尋ねするものです。

また、**事情を聴取する捜査員の性別はできる限り被害者のご希望を尊重します。担当捜査員に遠慮なくお申し出ください。**

被害者やご家族の方は、警察官による事情聴取のほかに、検察官からも事情を聞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どうして同じことを繰り返し聞かれるのだろうか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検察官が被疑者を起訴（不起訴）にするか、裁判所に対し、どの程度の刑罰を求めるかの判断をするために重要なことですから、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なお、被害直後から、捜査にご協力いただいて帰宅するまでの間、初期的支援を担当する警察官（初期支援要員）が被害者に付き添い、被害状況の聴取やお困りごとの相談に対応しております。



피해를 당하신 어린이들의 보호자□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당하신 어린이들의 보호자와 관계자분들께 경찰에서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읽어 주시고 모르는 점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수사원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이번에 어린이로부터 들은 건에 대해서 이후 다시 어린이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린이들이 말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사건 수사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비디오 기록이 외부에 누출 될 우려는 없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다만, 재판이 될 경우에는 재판 관계자가 시청할 수 있으므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

어린이들의 기억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무심코 한 말로 인해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에 어린이로부터 들은 건에 관하여, 보호자 관계자 분들이 어린이로부터 이야기를 묻거나, 어린이들 앞이나 들리는 곳에서 전화 등으로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어린이들이 스스로 이 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모두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후에 어린이들이 말했던 대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여, 담당수사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관계자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어린이들 앞에서 울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현재 자신을 지켜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어린이들을 꾸짖거나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건 아니지 않니?”라는 등 확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들에 대한 대응이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 불안한 것이 있으시면 담당수사원에게 상담하십시오.

被害にあわれたお子さまの保護者・関係者の方へ

被害にあわれたお子さまの保護者や関係者の皆様へ、警察からいくつかお知らせがあります。是非ご一読いただき、分からない点などがございましたら、遠慮なく担当捜査員にご質問ください。

今後の捜査について

今回お子さまからお聞かせいただいた件に関して、後日あらためてお子さまから話をお聞かせ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その際、必要と認めれば、お子さまが話す様子をビデオで記録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ビデオは、事件捜査する上で非常に重要となりますので、ご理解ください。ビデオの記録が外部に出回ることはありませんのでご安心ください。ただし、裁判となった場合、裁判の関係者が視聴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理解ください。

お子さまへの接し方について

お子さまの記憶はとても繊細ですので、**周りからのなにげない言葉がけで、時にお子さまの記憶している事実と異なる方向に導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ため、本日お子さまからお聞かせいただいた件に関して、**保護者・関係者の皆様がお子さまから話を聞き出したり、お子さまの前や聞こえる所から電話等で他の人と話すことはおやめください。**

もしも、お子さまが自分でこの件に関して話を始めた時は、質問せずに話を聞いてあげてください。その後、お子さまが話した通りの言葉を日時とともに記録し、担当捜査員にお伝えください。

保護者・関係者の皆様もお辛いと思いますが、お子さまの前で泣いたり、怒ったり、がっかりしないでください。お子さまには今強く守ってくれる大人が必要です。**くれぐれも、お子さまを叱ったり、根掘り葉掘り聞いたり、「それは間違っているんじゃない？」などと確認し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お子さまへの対応や、今後について不安なことなどございましたら、担当捜査員にご相談ください。

증거품 제출과 증거자료 채취

피해 당시 입은 의복이나 소지품 등을 증거품으로 제출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체나 소지품 등으로부터 부착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DNA형 감정을 비롯한 과학 수사에 사용하고 피의자 특정이나 범죄 입증을 위해 하는 작업이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해 주신 소지품 등은 증거품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면 돌려 드리겠습니다.

현장 검증(실황 확인)의 입회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현장 검증(실황 확인)에 입회하시도록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검증(실황 확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현장 등에서 범행의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의 해명과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일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소※3

범죄 가운데에는 피해자 등이 고소하지 않아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과실상해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가 필요하므로 범인의 처벌을 명확히 요구하는 고소장 제출 및, 경찰관의 조서 작성에 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고소**란 범죄피해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과실상해죄 등 “친고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유효한 고소가 없으면 검찰관은 사건을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証拠品の提出と証拠資料の採取

被害当時に着ていた服や所持品などを証拠品として提出し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犯罪を立証するために必要となりますので、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また、身体や所持品等から付着物を採取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DNA型鑑定をはじめとする科学捜査に活用し、被疑者の特定や犯罪の立証のために行うものですので、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なお、提出していただいた所持品などは、証拠品として警察や検察で保管する必要がなくなれば、お返しします。

現場検証（実況見分）への立会い

被害者やご家族には、現場検証（実況見分）に立ち会っ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現場検証（実況見分）とは、警察官が犯罪の現場などで、犯行の状況等を確認することをいいます。

正確を期するために、ある程度の時間がかかりますが、事実の解明や犯罪の立証に必要な場合に行うものですので、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告訴※3

犯罪の中には、被害者等が告訴しなくても犯人を処罰できるものがありますが、過失傷害罪などの場合は、告訴が必要になり、犯人の処罰を明確に求める告訴状の提出と、警察官の調書の作成に応じていただく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

※3 告訴とは、犯罪の被害者、法定代理人（親権者、後見人）などの告訴権者が捜査機関に対し、犯罪事実を申告し、犯人の処罰を求める意思表示をいいます。過失傷害罪などの「親告罪」とよばれる犯罪は、原則として被害者などからの有効な告訴がなければ、検察官は事件を起訴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법원 출두(재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검찰관과 협의를 하여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떠한 질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은

- 증언할 때에 가족이나 심리상담원 등을 동석시키는 것
- 증언할 때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에게서 안 보이게 차단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 법정과 별실을 케이블로 연결하여, 모니터를 통해 증언하는 것 (비디오 링크 방식)
- 성범죄 등의 피해자의 이름 등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않는 것
- 피해에 대한 지금의 심정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사건의 재판을 우선적으로 방청하는 것
- 관계사건의 공판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것
- 재판과 별도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사이에 민사상의 화해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대해 그 화해 내용을 공판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형사 화해)

등을 담당 검찰관을 통한 방법 등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피해자 연락원), 경시청 범죄피해자지원실 또는 도쿄지방검찰청 피해자 등 상담실, 범죄피해자지원실 등으로 문의하십시오.

범인으로부터의 보복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피해자 연락원)에게 상담하십시오.

◎문의처

■사건을 다룬 경찰서

■경시청 범죄피해자 지원실(일본어로 대응)

■도쿄지방검찰청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도쿄지방검찰청 다치카와 지부 피해자 등 상담실 (일본어로 대응)

☎03-3581-4321내선21233

☎03-3592-7611

☎042-548-5766

裁判所への出頭（裁判で利用できる制度）

裁判が始まると、被害者やご家族には、裁判所で証言し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その場合には、事前に検察官と打合せを行い、どんな証言をするのか、どんな質問を受けるのかなどについての詳しい説明を受けます。

また、被害者やご家族は、

- 証言する場合に、家族や心理カウンセラーなどに付き添ってもらふこと
- 証言する場合に、被告人や傍聴人から見えないように遮へい物を設置してもらふこと
- 法廷と別室をケーブルで結び、モニターを通じて証言すること（ビデオリンク方式）
- 性犯罪等の被害者の氏名等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
- 被害についての今の気持ちや事件についての意見を法廷で述べること
- 被害者やご遺族などが事件の裁判を優先して傍聴すること
- 関係事件の公判記録を閲覧、コピーすること
- 裁判以外で被害者側と加害者側の間で民事上の和解が成立した場合には、刑事事件を審理している裁判所に対して、その和解内容を公判調書に記載するよう求めること（刑事和解）

などを、担当の検察官を通じるなどして、裁判所に対して申し出ることができます。

詳しくは、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被害者連絡員）、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又は東京地方検察庁被害者等相談室、犯罪被害者支援室等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犯人からの報復などの心配がある場合には、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被害者連絡員）にご相談ください。

◎問合せ先

- 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
- 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日本語で対応） ☎03-3581-4321 内線 21233
- 東京地方検察庁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3-3592-7611
- 東京地方検察庁立川支部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42-548-5766

4 경시청에는 경찰에서의 수사 경과 등을 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제도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사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나 가족분은 범인은 누구이며, 범인의 처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피해자 연락원)이 사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희망하시면, 파출소 등에 있는 경찰관이 방법지도나 순찰 등을 해드립니다.

한편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피해자 연락원)에게 그 뜻을 전하십시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정보
○피의자의 이름, 주거, 기타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처분 상황·송치된 검찰청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송치했을 경우

○피의자의 이름, 주거, 기타 사건의 개요
○송치된 검찰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범인이 소년일 경우에는 알려드리는 내용 등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건을 다룬 경찰서

4 警視庁には、警察での捜査の経過等をお知らせする制度があります。

被害者連絡制度

捜査などに支障のない限り、事件情報をお知らせします。

被害者やご家族は、犯人は誰なのか、犯人の処分状況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などについて、関心をお持ちだと思います。

警察では、捜査などに支障のない限り、以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被害者連絡員）が事件情報をお知らせします。

また、ご希望により、交番などの警察官が防犯指導やパトロールなどを行います。

なお、事件のことを思い出したくないので、知らせてほしくない方は、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被害者連絡員）にその旨をお話ください。

被疑者を逮捕していない場合

○捜査状況

についての情報をお知らせします。

被疑者を逮捕した場合

○被疑者逮捕の旨

○被疑者の氏名、住居、その他事件の概要

○被疑者の処分状況・送致先検察庁

などについての情報をお知らせします。

被疑者を逮捕せずに送致した場合

○被疑者の氏名、住居、その他事件の概要

○送致先検察庁

についての情報をお知らせします。

なお、犯人が少年の場合は、お知らせする内容などが若干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問合せ先

■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

5 형사 재판에 참가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참가 제도

살인, 상해 등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나 과실운전치사상죄 등의 피해자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소송 수속상의 지위가 된 후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십시오.

참가를 허락받은 피해자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시청에서는 조기 단계로부터 피해자 지원에 정통한 변호사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회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피해자 연락원)에게 주저 마시고 신청하십시오.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

피해자참가인이 된 피해자 등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피고인 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만, 자금력(현금, 예금 등의 합계액. 청구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범죄행위로 인해 치료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 있다면, 그 비용은 자금력에서 공제됩니다.)이 200만엔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대해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를 경유하여 변호사("피해자참가변호사"라고 부릅니다.)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나라가 부담합니다.

희망하실 경우에는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에 신청하십시오.

※자금력이 200만엔 이상이며 500만엔에 달하지 않는 피해자 등은 도쿄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을 참조하십시오.

손해배상명령 제도

살인, 상해 등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 등의 피해자 등은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을 상대로 기소 후 형사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령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속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연도가 있었을 때 즉각 손해배상명령 사건의 심리가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4회 이내의 기일에 간결신속하게 행해지며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형사 기록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 피해자 등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에 용이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4회 이내의 기일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와 손해배상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통상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검찰관, 사건을 담당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사건을 다룬 경찰서

■경시청 범죄피해자 지원실(일본어로 대응)

☎03-3581-4321내선21233

■도쿄지방검찰청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3-3592-7611

■도쿄지방검찰청 다치카와 지부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42-548-5766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일본어로 대응)

☎0120-079714

범죄피해자 지원다이얼 (통역서비스)

☎0570-078377

5 刑事裁判に参加する制度などがあります。

被害者参加制度

殺人、傷害等の故意の犯罪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罪、過失運転致死傷罪等の被害者等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被害者参加人」という訴訟手続上の地位を得た上で、刑事裁判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刑事裁判への参加を希望される場合は、事件を担当する検察官にお申し出ください。

参加を許された被害者参加人は、公判期日に出席し、一定の要件の下で証人や被告人に対し質問をしたり、事実又は法律の適用についての意見を述べ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なお、警視庁では、早期の段階から被害者支援に精通した弁護士への法律相談等を可能にするため弁護士会等と連携しています。詳しくは、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被害者連絡員)に遠慮なくお申し出ください。

被害者国選弁護制度

被害者参加人となった被害者等は、公判期日に出席したり被告人質問などの行為を弁護士に委託することもできますが、資力（現金、貯金等の合計額。請求の日から6か月以内に犯罪行為を原因として治療費などの費用を支出する見込みがあれば、その費用は資力から控除されます。）が200万円に満たない場合には、裁判所に対し、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法テラス）を経由して、弁護士（「被害者参加弁護士」と呼ばれます。）の選定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弁護士の報酬及び費用は、国が負担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ご希望の場合は、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法テラス）にお申し出ください。

※ 資力が200万円以上500万円未満の被害者等は、東京都の支援制度を利用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42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損害賠償命令制度

殺人、傷害等の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罪等の被害者等は、刑事事件を担当している裁判所に対し、起訴後、刑事裁判の弁論が終わるまでの間に、刑事事件で起訴されている犯罪事実を原因と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を被告人に命ずるよう求める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手続は、被告人に対し有罪の言渡しがあった場合、直ちに損害賠償命令事件の審理が開始され、原則として4回以内の期日で簡易迅速に行われ、刑事事件を担当した裁判所が刑事記録を職権で取り調べるなど、被害者等による被害事実の立証が容易になっています。

なお、4回以内の期日では終わらない場合や損害賠償命令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などは、通常の民事訴訟手続に移行します。

詳しくは、担当の検察官、事件を担当する検察庁や裁判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問合せ先

- 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
- 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日本語で対応） ☎03-3581-4321 内線 21233
- 東京地方検察庁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3-3592-7611
- 東京地方検察庁立川支部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42-548-5766
-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法テラス）（日本語で対応） ☎0120-079714
- 犯罪被害者支援ダイヤル（通訳サービス） ☎0570-078377

6 사건이나 재판, 범인의 상황 등을 아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등 통지제도

검찰청에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등을 통지하는 “피해자 등 통지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 피해자나 그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분 중에서 통지를 희망하시는 분
- 목격자나 기타 참고인 등 중에서 통지를 희망하시는 분 (일부 통지를 제외함.)

내용

사안에 따라

- 사건의 처분 결과
- 재판을 하는 법원 및 재판이 열리는 날짜
- 재판의 결과
- 범인의 신병 상황
- 범인의 교도소에서의 처우 상황
- 범인의 교도소 출소에 관한 정보
-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 등

※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관이 통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통지 희망이 있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검찰관에게 사정 청취를 받는 분은 그 자리에서 검찰관에게 통지를 희망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십시오. 그 외의 분은 도쿄지방검찰청 또는 도쿄지방검찰청 다치카와 지부의 피해자 등 상담실, 범죄피해자 지원실로 연락하십시오.

피해자 등 상담실, 범죄피해자 지원실

도쿄지방검찰청에는 피해자 등의 부담과 불안감을 가능한 한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피해자 등 상담실,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며, 법정의 안내·동석, 사건 기록의 열람·증거품의 반환 등의 각종 수속을 도와 드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계기관·단체를 소개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합니다.

◎문의처

■도쿄지방검찰청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3-3592-7611

■도쿄지방검찰청 다치카와지부 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42-548-5766

6 事件や裁判、犯人の状況を知る等の制度があります。

被害者等通知制度

検察庁には、犯罪の被害にあわれた方々に、事件の処分結果などを通知する「被害者等通知制度」があります。

対象

- 被害者、その親族又はこれに準ずる方で通知を希望する方
- 目撃者、その他参考人などで通知を希望する方（一部の通知を除く。）

内容

事案に応じて

- 事件の処分結果
- 裁判を行う裁判所及び裁判が行われる日
- 裁判の結果
- 犯人の身柄の状況
- 犯人の刑務所における処遇状況
- 犯人の刑務所からの出所に関する情報
- 死刑を執行した事実 など

※ 事件の性質などから、通知しない方がよいと検察官が判断した場合には、通知希望があってもそ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通知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

方法

原則、文書により通知します。

検察官から事情聴取を受ける方は、その際に検察官に通知希望をお伝えください。それ以外の方は、東京地方検察庁又は東京地方検察庁立川支部の被害者等相談室、犯罪被害者支援室に連絡してください。

被害者等相談室、犯罪被害者支援室

東京地方検察庁は、被害者等の負担や不安をできるだけ和らげるため被害者等相談室、犯罪被害者支援室を設けています。

被害者等からの様々な相談の対応、法廷への案内・付添い、事件記録の閲覧・証拠品の返還などの各種手続の手助けや被害者支援の関係機関・団体の紹介などの支援活動を行います。

◎問合せ先

■東京地方検察庁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3-3592-7611

■東京地方検察庁立川支部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42-548-5766

7 소년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등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 심판개시의 결정이 있는 후,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소년 사건의 사건기록(소년의 요보호성에 관해 실시되는 조사에 대한 기록인 이른바 사회기록은 제외됩니다.)을 열람, 복사하는 것
- 판사나 가정법원 조사관에 대해 피해에 관한 심정과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살인, 상해 등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사건이나 과실운전치사상죄 등 (가해자의 연령이 사건 당시 12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 어느 상해 사안이든 이로 인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합니다.)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소년심판을 방청하는 것
- 가정법원에서 심판기일에 그동안의 심판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
-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의 결과 등의 통지를 받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가해자(소년)의 심판결과가 "소년원 송치" 또는 "보호관찰"인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 "소년원 송치" 일 때는 소년감별소에, "보호관찰"일 때는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 중 처우상황 등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년감별소 또는 거주하시는 도도부현의 보호관찰소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도쿄가정법원	☎03-3502-8311
■ 도쿄가정법원 다치카와지부	☎042-845-0365
■ 도쿄소년감별소	☎03-3931-1141
■ 도쿄서소년감별소	☎042-500-5271
■ 도쿄보호관찰소 범죄피해자 등 상담실	☎03-3597-0132

7 少年による事件の被害者等には、 次のような制度があります。

少年による事件の被害者等は、家庭裁判所に申し出ると、

- 審判開始の決定があった後、原則として、裁判所にある少年事件の事件記録（少年の要保護性に関して行われる調査についての記録である、いわゆる社会記録は除かれます。）を閲覧、コピーすること
- 裁判官や家庭裁判所調査官に対して、被害に関する心情や意見を述べること
- 殺人、傷害等の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事件、過失運転致死傷等（加害者の年齢が事件当時、12歳以上の場合に限られます。また、いずれも傷害の事案にあつては、これにより生命に重大な危険を生じさせた場合に限られます。）の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許可を得て少年審判を傍聴すること
- 家庭裁判所から、審判期日における審判の状況について説明を受けること
- 家庭裁判所から、少年審判の結果等の通知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詳しくは、事件を担当する家庭裁判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また、加害者（少年）の審判結果が「少年院送致」又は「保護観察」であった場合は、被害者等が、「少年院送致」の場合は少年鑑別所、「保護観察」の場合は保護観察所に申し出ると、

- 少年院又は保護観察中の処遇状況などについて通知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詳しくは、お近くの少年鑑別所又はお住まいの都道府県にある保護観察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問合せ先

- | | |
|-------------------|---------------|
| ■東京家庭裁判所 | ☎03-3502-8311 |
| ■東京家庭裁判所立川支部 | ☎042-845-0365 |
| ■東京少年鑑別所 | ☎03-3931-1141 |
| ■東京西少年鑑別所 | ☎042-500-5271 |
| ■東京保護観察所犯罪被害者等相談室 | ☎03-3597-0132 |

8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는 심정 등 청취·전달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는 가해자가 수형·재원하고 있는 동안 피해를 당하신 분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심정 등을 듣고, 피해를 당하신 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들은 내용을 수형중·재원중의 가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상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친권자 등)
- 피해자가 돌아가거나 중병이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친족(피해를 당한 부모님이나 자녀 등)또한 형제 자매

내용

대상이 되는 가해자는 형사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재원자입니다.

- 시설 담당 직원이 피해에 대한 심정, 피해를 당하신 분이 처한 상황, 수형중·재원중의 가해자의 생활과 행동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 가해자에게 전달을 희망하는 경우, 물어봤던 심정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가해자 면전에서 읽어 전달 드리겠습니다.
- 희망하신다면 전달할 때에 가해자가 말했던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의 실정 등을 바르게 알리고, 깊은 반성과 큰 후회가 되도록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이용에 대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문의처로 문의해주시시오.

◎문의처

■ 간토교정관구	☎048-600-1500
■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042-542-0328
■ 후추교도소	☎042-330-0023
■ 도쿄구치소	☎03-3602-7003
■ 다치카와구치소	☎042-540-4441
■ 다마소년원	☎042-627-2532
■ 동일본소년교정의료·교육센터	☎042-542-0024
■ 아이코여자학원	☎03-3480-2178
■ 도쿄소년감별소	☎03-3931-1141
■ 도쿄서소년감별소“도쿄서법무소년지원센터”	☎042-500-5271 내선7722

8 刑務所や少年院などには、心情等の聴取・伝達制度があります。

刑務所や少年院などでは、加害者が受刑・在院している間、被害にあわれた方から被害に関する心情等をお聴きし、被害にあわれた方が希望する場合は、これを受刑中・在院中の加害者に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

対象

- 被害者
- 被害者の法定代理人（親権者など）
- 被害者が亡くなっていたり、重い病気やけがをされている場合は、配偶者、直系親族（被害を受けた方の親や子など）又は兄弟姉妹

内容

対象となる加害者は、刑事施設（刑務所、少年刑務所、拘置所）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と少年院に収容されている在院者となります。

- 施設の担当職員が、被害に関する心情、被害を受けられた方の置かれている状況、受刑中・在院中の加害者の生活や行動に関するご意見をお伺いします。
- 加害者への伝達を希望される場合、お伺いした心情等を記載した書面を加害者の面前で読み上げて伝達します。
- ご希望に応じ、伝達の際に加害者が述べた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
- 加害者に対しては、被害の実情等を直視させ、反省や悔悟の情が深まるよう指導等を行います。

利用について

制度をご利用いただくには、申出書のほか、本人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等の提出が必要になります。詳しくは、下記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法務省ホームページ <https://www.moj.go.jp/KYOUSEI/SHINJO/>



◎問合せ先

- | | |
|-------------------------------|----------------------|
| ■ 関東矯正管区 | ☎048-600-1500 |
| ■ 東日本成人矯正医療センター | ☎042-542-0328 |
| ■ 府中刑務所 | ☎042-330-0023 |
| ■ 東京拘置所 | ☎03-3602-7003 |
| ■ 立川拘置所 | ☎042-540-4441 |
| ■ 多摩少年院 | ☎042-627-2532 |
| ■ 東日本少年矯正医療・教育センター | ☎042-542-0024 |
| ■ 愛光女子学園 | ☎03-3480-2178 |
| ■ 東京少年鑑別所 | ☎03-3931-1141 |
| ■ 東京西少年鑑別所
(東京西法務少年支援センター) | ☎042-500-5271 内線7722 |

9 도쿄보호관찰소에는 심정 등 청취·전달제도 등이 있습니다.

도쿄보호관찰소에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 심정 등 청취·전달제도
- 피해자 등 통지제도
- 상담·지원

제도의 창구가 있고, 전임 담당자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된 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으로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

내용

- 보호관찰중인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심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종료·상황 등을 알려드립니다.
- 전임 담당자에게 불안감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대해

- 상담이나 지원 외의 제도는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자의 범위, 접수처, 신청 수속, 구비 서류 등은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보호관찰소 범죄피해자 등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도쿄보호관찰소 범죄피해자 등 상담실(일본어로 대응)

☎03-3597-0132

9 東京保護観察所には、心情等聴取・伝達制度などがあります。

東京保護観察所には、犯罪の被害にあわれた方々のために

- 心情等聴取・伝達制度
- 被害者等通知制度
- 相談・支援

の制度の窓口があり、専任の担当者に対応しております。

対象

主として被害者又はそのご遺族で、制度の利用を希望される方

内容

- 保護観察中の加害者に対し、被害者の方の心情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
- 加害者の保護観察の開始・終了・状況などをお知らせします。
- 専任の担当者に不安や悩み事を相談することができます。

利用について

- 相談・支援以外の制度は利用できる期間が限られています。
- 制度をご利用いただくには、申出書のほか、本人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等の提出が必要になります。
- 対象となる方の範囲、申出先、申出の手続、必要書類等は制度によって異なります。

詳しくは東京保護観察所犯罪被害者等相談室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法務省ホームページ「更生保護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施策」
https://www.moj.go.jp/hogo1/soumu/hogo_victim.html



◎問合せ先

■東京保護観察所犯罪被害者等相談室（日本語で対応）

☎03-3597-0132

10 경시청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의료비 등 공비 지급)

경시청에서는 상해 등 피해를 당하신 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료비 등을 공비로 지급합니다.(일부 상한 있음)

상해 등 피해를 당하신 분

- 피해 사실은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
- 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상한 있음)
- 정신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카운슬링 비용**(상한 있음)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

- **긴급피임약 비용***
- **성 감염증 검사 비용***
- **인공임신중절 비용***
- 상기 진료를 받기 위한 **진찰료**(상한 있음)
- 정신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카운슬링 비용**(상한 있음)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

정신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카운슬링 비용**(상한 있음)

자세한 것은 사건을 다룬 경찰서의 수사원(피해자 연락원) 또는 경시청 범죄피해자 지원실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사건을 다룬 경찰서
- 경시청 범죄피해자 지원실 (일본어로 대응)

☎03-3581-4321 내선21223

10 警視庁には、被害者等に対する経済的支援の制度があります。（医療費等公費支出）

警視庁では、傷害などの被害にあわれた方の経済的負担を軽減するため、一定の条件の下、医療費等を公費で支出しています。（一部上限あり）

傷害などの被害にあわれた方

- 被害事実を立証するための「**診断書料**」
- 診断書を作成するために受診した際の「**診察料**」（上限あり）
- 精神的な被害を回復させるための「**カウンセリング費用**」（上限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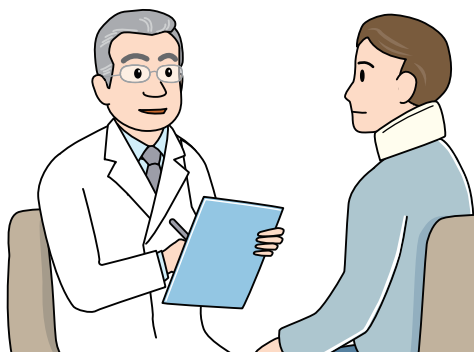
性犯罪の被害にあわれた方

- 「**緊急避妊薬費用**」
- 「**性感染症検査費用**」
- 「**人工妊娠中絶費用**」
- 上記処置に伴う「**診察料**」（上限あり）
- 精神的な被害を回復させるための「**カウンセリング費用**」（上限あり）

ご家族を亡くされた方

- 精神的な被害を回復させるための「**カウンセリング費用**」（上限あり）

詳しくは、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の捜査員（被害者連絡員）又は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問合せ先

- 事件を取り扱った警察署
- 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日本語で対応）

☎03-3581-4321 内線 21223

11 범죄피해 급부제도가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본의 아닌 죽음을 당하신 분의 가족, 중상병을 입으신 분, 장애가 남게 되신 분에게 나라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부금의 종류와 수급자격자

○유족 급부금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사망하신 분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중 제일 높은 순위의 유족이신 분(순위는 번호순)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범죄가 원인이 되어 불행하게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보험진료 의료비의 피해자부담액이 3년을 한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중상병 급부금

중상병(1개월 이상의 요양과 3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1개월 이상의 요양과 3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PTSD 등의 정신 질환)을 입으신 분에게 3년을 한도로 보험진료 의료비의 피해자 부담 상당액이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급부금

장애가 남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장애등급 제1~14급)

※ 해당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해자나 유가족 분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피해자의 연령과 근로 수입액 등을 근거로 산출됩니다.

단,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을 경우나 친족간의 범죄 등에는 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산재보험 등의 공적인 보상을 받았을 경우나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는 그 금액과 급부금의 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 수속

급부금을 지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체 공안위원회로 신청하십시오. 접수는 각 지방자치체 경찰본부 또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신청은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중상·병 또는 장애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또는 당해 사망, 중상·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당해 범죄 행위의 가해자로부터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돼 있었다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이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시청 범죄피해자 지원실(일본어로 대응)

☎03-3581-4321 내선21222

■가까운 경찰서(경무계)

11 犯罪被害給付制度があります。

通り魔殺人等の故意の犯罪行為によって、不慮の死を遂げた方のご家族、重傷病を負った方、障害が残った方に、国が給付金を支給するものです。

給付金の種類と受給資格者

○遺族給付金

故意の犯罪によって死亡された方の①配偶者、②子、③父母、④孫、⑤祖父母、⑥兄弟姉妹のうち、第一順位遺族の方（順位は、番号順）に支給されます。

なお、犯罪が原因で不幸にして亡くなられた場合は、死亡に至るまでの保険診療による医療費の被害者負担額が3年間を限度として加えて支給されます。

○重傷病給付金

重傷病(1か月以上の加療かつ3日以上入院を要する負傷、1か月以上の加療かつ3日以上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PTSDなどの精神疾患)を負った方に、3年間を限度として、保険診療による医療費の被害者負担相当額が被害者本人に支給されます。

○障害給付金

障害の残った被害者本人に支給されます。(障害等級第1～14級)

※当該犯罪行為が行われたときにおいて、日本国籍を有せず、かつ、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い被害者やご遺族の方は、受給対象から除かれます。

支給額

被害者の年齢や勤労による収入の額などに基づいて算定されます。

ただし、被害者にも原因がある場合や親族間での犯罪などには、給付金の全部又は一部が支給さ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また、労災保険などの公的補償を受けた場合や損害賠償を受けたときは、その額と給付金の額とが調整されます。

申請手続

給付金の支給を受けようとする方は、住所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公安委員会に申請を行ってください。受付は、各都道府県警察本部又は警察署で行っています。

申請は、犯罪行為による死亡、重傷病又は障害の発生を知った日から2年を経過したとき、又は当該死亡、重傷病又は障害が発生した日から7年を経過したときではできません。ただし、当該犯罪行為の加害者により身体の自由を不当に拘束されていたことなどの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この期間内に申請できなかったときは、その理由のやんだ日から6か月以内に限り、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問合せ先

■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日本語で対応）

☎03-3581-4321 内線 21222

■お近くの警察署（警務係）

12 도쿄도에는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 아래 지원 제도 이용시, 피해 신고서 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그 밖에 지원 제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지원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지원금 지급

범죄 피해를 당하신 도쿄 도민이나 유족분들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 위로 지원금 30만엔
- 중상병 위로 지원금 10만엔

《지원 대상자》

- 살인, 상해 등 고의적인 범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받은 분의 유족(도쿄 도민) 및 동 피해로 인해 중상·병을 입은 도쿄 도민

《지원 요건》

-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치료 및 3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던 중상병을 입은 경우
-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

도쿄도총합상담문의처 (공익사단법인 피해자지원도민센터)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월·목·금 9:30~17:30 화·수 9:30~19: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전화번호 03-3222-9050
042-506-1042 (다마 지소)

이전비 지원

도쿄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범죄 피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비 등을 지원합니다.

- 최대 30만엔을 한도로 이전비 실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

- 살인, 상해, 성범죄 등 고의적인 범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도쿄 도민 및 동거하던 유족

《지원 요건》

- 자택이나 자택 인근에서 피해를 당하여 거주하는 자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하지만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 주거 또는 그 인근이 아니더라도 토교 도내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라는 부동의 추행, 부동의 성교 등죄, 감호자 추행죄 및 감호자 성교 등죄 (이들에 준하는 범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등으로 합니다
-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

도쿄도총합상담창구(공익사단법인 피해자 지원 도민센터)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월·목·금 9:30~17:30 화·수 9:30~19: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전화번호 03-3222-9050
042-506-1042 (다마 지소)

12 東京都には、被害者等のための支援制度があります。

- ※ 下記の支援制度のご利用に当たっては、被害届が提出されているなど、被害を受けた事実が客観的に確認できることが必要となります。
- ※ その他、支援制度ごとに必要な要件があります。詳しくは各相談窓口で相談ください。

見舞金の支給

犯罪被害にあわれた都民の方やご遺族である都民の方に見舞金を支給します。

- 遺族見舞金 30万円
- 重傷病見舞金 10万円

《対象となる方》

- ・殺人、傷害など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生命や身体への被害を受けた方の遺族(都民)、及び同被害により重傷病となった都民

《主な要件》

- ・重傷病の場合は、医療機関における治療に1か月以上かつ入院3日以上を要したこと
- ・犯罪発生の日から1年以内に申し出があること

東京都総合相談窓口（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へご相談ください

受付時間 月・木・金 9:30～17:30 火・水 9:30～19:00 ※祝日、年末年始を除く

電話 03-3222-9050
042-506-1042（多摩支所）

転居費用の助成

都民の方が、犯罪被害により今までの住居に住むことが困難となった場合に、転居等の費用を助成します。

○転居等の実費のうち最大30万円まで

《対象となる方》

- ・殺人、傷害、性犯罪など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生命や身体への被害を受けた都民、及び同居していた遺族

《主な要件》

- ・自宅や自宅付近で被害にあわれ、自宅に住み続けることが困難になったこと
ただし、性犯罪被害については原則、住居又はその付近でなくても東京都内で被害を受けた場合は対象となります。
※性犯罪とは、不同意わいせつ罪、不同意性交等罪、監護者わいせつ罪及び監護者性交等罪（これらに準じると認められる場合を含む）等とします。
- ・犯罪発生の日から1年以内に申し出があること

東京都総合相談窓口（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へご相談ください

受付時間 月・木・金 9:30～17:30 火・水 9:30～19:00 ※祝日、年末年始を除く

電話 03-3222-9050
042-506-1042（多摩支所）

무료 법률 상담

범죄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대응합니다.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 상담: 최대 1시간 30분까지 무료

《지원 대상자》

- 범죄 피해를 당한 도쿄 도민 및 그 가족· 유족
- 도쿄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도쿄 도내에 근무·재학하시는 분 및 가족·유족

변호사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월~금 11:00~16: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전화번호 03-3581-6666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가 공동설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상기 접수 시간 내에서 우선 전화 상담(30분 이내)을 진행합니다.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면접 상담은 무료입니다.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도쿄도총무국인권부인권사책추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월~금 9:00~17: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전화번호 03-5388-2589 (일본어로 대응)

피해자참가제도에서의 변호사 비용 지원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자 분 및 그 유족 분 등이 그 범죄 피해에 관한 형사 재판에 출석하거나 피고인 질문 등을 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 이용에 관해 변호사에 위탁할 경우 착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레이와3년(2021년)4월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해가 그 대상입니다.

○최대 10만엔을 한도로 변호사 비용 (착수금) 지원

《지원 대상자》

- 도쿄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당한 도쿄 도민 및 그 친족이며 피해자 참가제도 허락을 받으신 분. (단 국가 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쿄도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무료법률상담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도쿄도총무국인권시책추진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월~금 9:00~17: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전화번호 03-5388-2589 (일본어로 대응)

◎문의처

■도쿄도 총무국 인권부 인권시책추진과 (일본어로 대응)

☎03-5388-2589

無料法律相談

犯罪被害によって生じる法律問題について、弁護士が直接電話に対応し、その後、必要に応じて面接による相談ができます。

○面接相談：最大1時間30分まで無料

《対象となる方》

- ・犯罪被害を受けた都民及びその家族・遺族
- ・都内で発生した犯罪による被害を受けた都内在勤・在学の方及びその家族・遺族

弁護士会 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へご相談ください

受付時間 月～金 11:00～16:00 ※祝日、年末年始を除く

電話 03-3581-6666

東京弁護士会、第一東京弁護士会、第二東京弁護士会が共同設置しています。弁護士が直接電話に応じ、上記受付時間の中でまずは電話相談（30分以内）を行います。その後、必要に応じて面接相談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いずれも無料です。

※制度内容については、東京都総務局人権部人権施策推進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受付時間 月～金 9:00～17:00 ※祝日、年末年始を除く

電話 03-5388-2589（日本語で対応）

被害者参加制度における弁護士費用の助成

故意の犯罪行為による被害にあわれた被害者の方やご遺族の方などが、その犯罪被害に関する刑事裁判に出席したり、被告人質問などを行う「被害者参加制度」の利用に関して、弁護士に委託した場合の着手金の一部を助成します。

※ 令和3年4月1日以降に発生した犯罪被害を対象としています。

○弁護士費用（着手金）のうち最大10万円まで

《対象となる方》

- ・都内で発生した犯罪被害を受けた都民及びその親族であり、被害者参加制度の許可を受けていること（ただし、被害者参加人のための国選弁護制度に該当せず、都の資力要件に該当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弁護士 または 無料法律相談 までご相談ください

※制度内容については、東京都総務局人権部人権施策推進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受付時間 月～金 9:00～17:00 ※祝日、年末年始を除く

電話 03-5388-2589（日本語で対応）

◎問合せ先

■東京都総務局人権部人権施策推進課（日本語で対応）

☎03-5388-2589

13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709조 이하)에 해당하며,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가족을 범죄 피해로 잃으신 분은 가해자 등에 대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는 민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민사수속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형사 수속과는 다르므로 변호사회 등에서 상담하십시오.

◎문의처

- | | | |
|---------------------------|-------------|---------------|
| ■도쿄변호사회 | } (일본어로 대응) | ☎03-3581-6666 |
| ■제1도쿄변호사회 | | |
| ■제2도쿄변호사회 | | |
|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일본어로 대응) | | |
| •범죄피해자 지원다이얼 | | ☎0120-079714 |
| •법테라스 도쿄 | | ☎0570-078301 |
| | (통역서비스) | ☎0570-078377 |

13 民事上の損害賠償請求制度があります。

犯罪は、他人の権利を侵害し、これによって他人に損害を生じさせる行為であることから、民法上の不法行為（民法第709条以下）に該当し、被害にあわれた方やご家族を犯罪被害で亡くされた方は、加害者などに対して財産的損害及び精神的損害の賠償請求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制度は、民事訴訟法等に基づく民事手続に従って行われるものであり、刑事手続とは異なりますので、弁護士会などにご相談ください。



◎問合せ先

- | | | |
|---------------------------|------------|---------------|
| ■東京弁護士会 | } (日本語で対応) | ☎03-3581-6666 |
| ■第一東京弁護士会 | | |
| ■第二東京弁護士会 | | |
|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法テラス）（日本語で対応） | | |
| ・犯罪被害者支援ダイヤル | | ☎0120-079714 |
| ・法テラス東京 | | ☎0570-078301 |
| | (通訳サービス) | ☎0570-078377 |

14 세법상의 경감조치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은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소득 공제“, “납세 완화 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십시오.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

범죄 피해로 인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2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소득 공제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정신상의 상해를 입으신 분은 소득세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납세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친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납부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만엔(특별 장애인인 경우 40만엔, 동거 특별 장애인인 경우 75만엔) 이 공제됩니다.

○과부·한부모 공제

납세자 본인이 과부 또는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부인 경우 27만엔, 한부모인 경우 35만엔이 공제됩니다.

납세 완화 조치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정신상의 상해를 입으신 분은 소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납세 완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 유예

납세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세 납부가 불가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 최대 1년간 납부가 유예되며 유예 기간 중의 연체세 총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환가 유예

국세 일시 납부로 인해 사업 계속 또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한 납세 의사를 유한 자임이 인정되면 최대 1년간 체납 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가 유예되며 유예 기간 중의 연체세 일부가 면제됩니다.

기타

납세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도쿄국세국 전화상담센터 (영어로 대응)
(경축일 및 연말연시 제외, 월~금9:00~17:00)

☎03-3821-9070

14 税法上の軽減措置があります。

犯罪被害にあわれた方は、「申告・納付期限の延長」、「所得控除」、「納税緩和措置」等が認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下記問合せ先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申告納付期限の延長

犯罪被害により申告・納付等をその期限までにできない方は、所轄税務署長に申請し、その承認を受けることにより、その理由のやんだ日から2か月以内の範囲でその期限が延長されます。

所得控除

犯罪被害により心身への傷害を受けた方は、所得税の計算において、以下のような所得控除が認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医療費控除

納税者ご本人や生計を一にする配偶者その他の親族のために支払った医療費について、その医療費の額を基に計算される金額が控除されます。

○障害者控除

納税者ご本人や同一生計配偶者、扶養親族が障害者に該当する場合に27万円（特別障害者は40万円、同居特別障害者は75万円）が控除されます。

○寡婦・ひとり親控除

納税者ご本人が寡婦やひとり親に該当する場合は、寡婦の方は27万円、ひとり親の場合は35万円が控除されます。

納税緩和措置

犯罪被害により心身への傷害を受けた方は、所轄税務署長に申請することにより、以下のような納税緩和措置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

○納税の猶予

納税者ご本人や生計を一にする親族が病気や負傷により納付すべき国税を一時に納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等は、最大1年間納税が猶予され、猶予された期間に係る延滞税の全部又は一部が免除されます。

○換価の猶予

国税を一時に納付することにより事業の継続又はその生活の維持が困難にな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納税について誠実な意思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には、最大1年間滞納処分による財産の換価が猶予され、猶予された期間に係る延滞税の一部が免除されます。

その他

納税証明書の手数料が不要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問合せ先

■東京国税局電話相談センター（英語で対応）
（祝日及び年末年始を除く、月～金 9:00～17:00）

☎03-3821-9070

15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외국인으로 범죄로 부상을 입으신 분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건강보험에 신청함으로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행하게 사망하신 경우에는 장례 화장 절차를 마치신 분에게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단,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한 건강보험 측에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어로 진찰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일본의 의료제도에 관해 알고 싶을 경우에는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로 상담하십시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조합

■ 근무하시는 회사

■ 전국건강보험협회 각 지방지부

■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03-5285-8181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로 대응) (9:00~20:00)

15 社会保険制度が適用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外国人の方で、犯罪被害により怪我をした場合には、日本人と同様に加入している健康保険に届け出ることによって保険の適用が受けられます。

また、不幸にして亡くなられた場合は、埋葬した方に一時金が支払われます。

ただし、不法滞在等健康保険の被保険者資格がない外国人の場合は、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られません。詳しくは、加入している健康保険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なお、外国語で受診できる医療機関や日本の医療制度についてお知りになりたい場合は、東京都保健医療情報センターにご相談ください。



◎問合せ先

■国民健康保険の場合

お住まいの市区町村役場又は国民健康保険組合

■お勤め先の会社

■全国健康保険協会各都道府県支部

■東京都保健医療情報センター

☎03-5285-8181

(英語、中国語、韓国語、タイ語、スペイン語で対応) (9:00 ~ 20:00)

16 도영주택 입주시에 우대추첨제도가 있습니다.

범죄 등으로 종전의 주거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신 분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도영주택 신청시 우대조치(우대추첨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세대 (당첨 확률이 "일반세대"의 5배입니다.)

신청자 본인 혹은 동거 친족 중 1명이 살인,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범죄로 종전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신 분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경찰의 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를 입은 후 5년 이내이신 분

D V 피해자세대 (당첨 확률이 "일반세대"의 5배입니다.)

신청자 본인 혹은 동거 친족 중 1명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받은 피해자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배우자폭력 상담지원센터의 일시보호 또는 여성 자립 지원 시설의 보호를 받은 후로부터 5년 이내이신 분

② 배우자 등에 대해 법원이 접근금지명령 또는 퇴거명령이 내려진 후로부터 5년 이내이신 분

※ "배우자 등"에는 혼인과 동일한 상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포함합니다.

※ 독신 DV피해자이신 분은 독신자용 모집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추첨은 없습니다.)

모집시기

○가족용·독신자용 연 2회 (5월· 11월)
○독신자용 연 2회 (2월· 8월)

신청자격

○도쿄도 내에서 살고 있는 것 (독신자용에 응모할 경우는 도쿄도 내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것)
○세대 소득이 소득기준 내에 있는 것 (2인 가족의 경우, 0엔~2,276,000엔)
○폭력단원이 아닌 것

우대추첨

가족용 모집의 추첨 방식으로 일정 우대 자격이 있는 세대가 일반 세대보다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도쿄도 주택공급공사 도영주택모집센터
(일본어로 대응)

☎03-3498-8894

16 都営住宅の入居における優遇抽せん制度があります。

犯罪などによって従前の住居に住むことが困難となった方に対しては、下記の条件に該当すれば、都営住宅への申込みの際に優遇措置(優遇抽せん等)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犯罪被害者世帯 (当せん確率が「一般世帯」の5倍になります。)

申込者本人若しくは同居親族のうち1人が、殺人、過失致死、業務上過失致死等の犯罪により従前の住宅に居住することが困難となった方で、被害にあったことが警察の証明等で確認でき、犯罪被害にあってから5年以内の方

DV被害者世帯 (当せん確率が「一般世帯」の5倍になります。)

申込者本人又は同居親族のうち1人が、配偶者等から暴力を受けた被害者で
①又は②に当てはまる方

- ① 配偶者暴力相談支援センターでの一時保護又は女性自立支援施設において保護を受けてから5年以内の方
 - ② 配偶者等に対し裁判所から接近禁止命令又は退去命令が出されてから5年以内の方
- ※「配偶者等」には、婚姻と同様の共同生活を営んでいる交際相手を含みます。
※ 単身のDV被害者の方につきましては、単身者向けの募集に応募することができます(優遇抽せんはありません。)

募集時期

- 家族向・単身者向 年2回(5月・11月)
- 単身者向 年2回(2月・8月)

申込資格

- 東京都内に住んでいること(単身者向に応募する場合は、東京都内に継続して3年以上居住していること)
- 世帯の所得が所得基準内であること(2人家族の場合、0円～2,276,000円)
- 暴力団員でないこと

優遇抽せん

家族向けの募集における抽せん方式で、一定の優遇資格のある世帯について、一般世帯よりも当せん確率が高くなる制度です。

◎問合せ先

■東京都住宅供給公社都営住宅募集センター
(日本語で対応)

☎03-3498-8894

17 폭력단 등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폭력단 추방운동추진 도민센터에서는 조폭 등과 관련된 고민거리 등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폭력추방 상담위원이 상담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센터에서 위촉한 민사개입폭력 전문변호사에 의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은 엄수됩니다.

또 지원 사업으로서

- 조폭 등으로부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인 폭력조직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민사소송 수속 등에 관한 비용을 대부
- 조폭 조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급 (단 지급 요건 있음)
- 폭력단 추방운동 등의 추진자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위로금 등을 지급(단 지급 요건 있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공익재단법인 폭력단추방운동추진도민센터(일본어로 대응) ☎0120-893-240
(경축일을 제외, 월~금9:00~17:00) ☎03-3291-8930
- 경시청 폭력 핫라인(일본어로 대응) ☎03-3580-2222
(24 시간 접수)

17 暴力団などに関するあらゆる相談ができます。

公益財団法人暴力団追放運動推進都民センターでは、暴力団などに関する困り事などに関して、豊富な経験を有する暴力追放相談委員が相談に応じるほか、センターで委嘱している民事介入暴力専門の弁護士による相談にも応じています。

相談は無料で、秘密は厳守されます。

また、支援事業として、

- 暴力団などから犯罪の被害を受けた方が、加害者である暴力団などを相手方として損害賠償請求の民事訴訟を起こす際、そのケースに応じて、民事訴訟手続などに関する費用の貸付け
- 暴力団員等による不当な行為の被害者に対する見舞金等の支給（ただし支給要件あり）
- 暴力団追放運動等の推進者等が被害に遭った場合の見舞金等の支給（ただし支給要件あり）

などを行って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s://boutsui-tokyo.com>



◎問合せ先

- 公益財団法人暴力団追放運動推進都民センター（日本語で対応） ☎0120-893-240
（祝日を除く、月～金 9:00～17:00） ☎03-3291-8930
- 警視庁暴力ホットライン（日本語で対応） ☎03-3580-2222
（24時間受付）

18 피해자 여러분의 다양한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 공익사단법인 피해자지원도민센터 ~

활동 목적

공익사단법인 피해자지원도민센터는 범죄 등의 피해자나 가족에게 정신적 지원이나 기타 각종 지원 활동을 하여 피해의 회복과 경감에 종사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피해자 지원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업무 내용

다양한 피해자 지원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직원에게는 법률로 비밀유지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03-3222-9050 (월·목·금 9:30~17:30, 화·수 9:30~19:00)
다마 지소 042-506-1042
※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일본어로 대응
FAX 03-3222-9053 (24시간 접수)

○면접 상담

범죄피해 상담원에 의한 지속적인 상담 및 공인심리사에 의한 카운슬링을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센터(지요다구) 및 다마지소(다치카와시)에서 면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03-3222-9050 또는 042-506-10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https://www.shien.or.jp> (상담코너에서 24시간 접수)

○피해자 직접지원

자택방문이나 병원·경찰서·검찰청·법원 등을 오갈 때 동행하는 일을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shien.or.jp>



◎문의처

■공익사단법인 피해자지원도민센터 사무국(일본어로 대응)

☎ 03-3222-9052

FAX 03-3222-9053

18 被害者の様々なサポートをする支援機関があります。

～ 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 ～

活動目的

公益社団法人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は、犯罪等の被害者やご家族に、精神的支援やその他各種支援活動を行い、被害の回復及び軽減に当たるとともに、社会全体の被害者支援意識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公益法人です。

業務内容

多様な被害者支援の活動を無料で行っています。

なお、センターの職員には、法律により守秘義務が課せられています。

○電話相談

☎ 03-3222-9050 (月・木・金 9:30～17:30、火・水 9:30～19:00)
多摩支所 042-506-1042 ※祝日、年末年始を除く※日本語で対応
FAX 03-3222-9053 (24時間受付)

○面接相談

犯罪被害相談員による継続的な相談及び公認心理師によるカウンセリングを必要に応じて行っています。

都民センター(千代田区)及び多摩支所(立川市)で面接相談を行っていますので、まずは電話(03-3222-9050又は042-506-1042)でお問い合わせ下さい。

○ホームページによる相談

<https://www.shien.or.jp> (相談コーナーで24時間受付)

○被害者への直接的支援

自宅訪問、病院・警察署・検察庁・裁判所等への付添いを必要に応じて行って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s://www.shien.or.jp>



◎問合せ先

■公益社団法人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事務局(日本語で対応)

☎03-3222-9052

FAX 03-3222-9053

19 도쿄도외국인상담실

도쿄도는 외국인들도 생활하기 편한 도시가 되도록〔외국인상담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시는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 곤란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나 긴급시의 문의처
- 일본의 관습, 문화, 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문제
- 가족 및 자녀들에 관한 문제 등

상담은 주로 전화로 받고 있으나 상담실에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자의 비밀은 엄수합니다.

상담 시간 9 : 3 0 ~ 1 2 : 0 0 / 1 3 : 0 0 ~ 1 7 : 0 0

언어	상담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	전화
영어	월요일~금요일	03-5320-7744
중국어	화요일·금요일	03-5320-7766
한국어	수요일	03-5320-7700

◎문의처

■도쿄도 생활문화국 도민생활부 지역활동추진과 외국인 상담

19 東京都外国人相談

東京都では、この東京を外国人の方々にも住みやすい街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そこで、皆さんが日常の暮らしの中で、困ったこと、知りたいことが起こったときにアドバイスする「外国人相談」を開設しています。

お気軽にご利用ください。

例えば

- 日常生活にかかわる問題や、緊急時の問い合わせ先
- 日本の習慣・文化・社会制度に関すること
- 交通事故に関する問題
- 家族や子供に関する問題など

相談は電話でお受けしていますが、ご来訪の場合は、事前にご連絡ください。

相談はすべて無料です。

相談の秘密は守ります。

相談時間 9:30~12:00 / 13:00~17:00

相談言語	相談日 (祝日、年末年始を除く)	電話
英語	月曜日~金曜日	03-5320-7744
中国語	火曜日・金曜日	03-5320-7766
韓国語	水曜日	03-5320-7700

◎問合せ先

■東京都生活文化局都民生活部地域活動推進課外国人相談

초기지원요원

初期支援委員

성명 (氏名)

계급 (階級)

전화번호 (電話)

내선번호 (內線)

경시청(警視庁)

경찰서 (署)

피해자 연락원

被害者連絡員

성명 (氏名)

계급 (階級)

전화번호 (電話)

내선번호 (內線)

경시청(警視庁)

경찰서 (署)

경찰서 및 부대의 소재지 (署・隊の所在地)

도쿄도 (東京都)

구 / 시(区・市)

もう一度 あなたの笑顔を見たいから
～相談してみませんか～

被害にあわれた方へ (韓国語版)

(身体犯被害者・家族用)

令和8年3月第15版

編集・発行 / 警視庁犯罪被害者支援室



街とともに。人とともに。
FOR MORE COMMUNICATION

けいしちょう

전자 버전은 여기



令和8年3月発行 第15版

リサイクル適性[Ⓐ]

この印刷物は、印刷用の紙へ
リサイクルできます。